

2024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연수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

○ 일정: 2024. 11. 22.(금)

○ 장소: 루나미엘레 파크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 여의공원로 101)

 사단
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FDO Korea Federation of Disability Organizations

 보건복지부

C·O·N·T·E·N·T·S

■ 2024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연수 소개

- 행사 개요 3
- 참가자 소개 4
- 세부프로그램 5

■ [기조 강연]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1)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 골든타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7
- 강연 : 김용익 이사장(돌봄과미래)

■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2)
“고령장애인 통합지원 모델 필요성과 통합 돌봄” 41
- 진행 :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 패널 : 김용익 이사장(돌봄과미래)
김진우 교수(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종혁 교수(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서해정 센터장(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 [2024 장애인 정책 최신이슈 TALK]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정책현안 & 비전 talk 45
- 장애인정책국 주요 사업 추진사항

■ [부록]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57

2024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연수

지역사회통합돌봄

-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 -

- 연수명 :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연수
- 일 정 : 2024. 11. 22.(금) 13:30 ~ 19:30
- 장 소 : 루나미엘레 파크뷰(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2층)
- 일정표 ※ 현장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간		주요내용
13:30~14:00	(30')	개회 및 참가자 소개
14:00~15:15	(75')	기조 강연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 (1)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 골든타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강연 : 김용익 이사장(돌봄과미래)
15:15~16:00	(45')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 (2) “고령장애인 통합지원 모델 필요성과 통합 돌봄” - 진행 : 김동호(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 패널 : 김용익 이사장(돌봄과미래) 김진우 교수(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종혁 교수(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서해정 센터장(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16:00~16:30	(30')	쉬는 시간
16:30~18:00	(90')	2024 장애인 정책 최신이슈 TALK
		○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한시적 허용 ○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등 - 발표 및 토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및 참가자 질의응답
18:00~19:30	(90')	[석식 및 교류시간] 민·관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 논의

□ 참가자 소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 장애인정책과 방석배 장애인정책국장 직무대리
- 장애인정책과 정명현 서기관
- 장애인정책과 장택용 주무관
- 장애인권익지원과 이춘희 과장
- 장애인자립기반과 이예진 사무관
- 장애인서비스과 모두순 과장
- 장애인건강과 권봉목 사무관


○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 국제키비탄한국본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뇌성마비복지회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한국신장장애인협회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한국장루장애인협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한국장애인부모회
- 한국장애인연맹(DPI)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 해냄복지회

1) 개회 및 참가자 소개 : 참여자 자기소개 및 상호인사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1)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 골든타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김용익 이사장, 돌봄과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1984~2013) · 의료관리학연구소 소장(2011~2012)) -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창립멤버(1987) -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2004~2006)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2006~2008) -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2012~2016/19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지방자치발전특위 위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2017~2021) - (저서) 차상위계층의 의료보장(2004), 복지도시를 만드는 6가지 방법(2010), 대한민국 의료혁명(2015) 등

3)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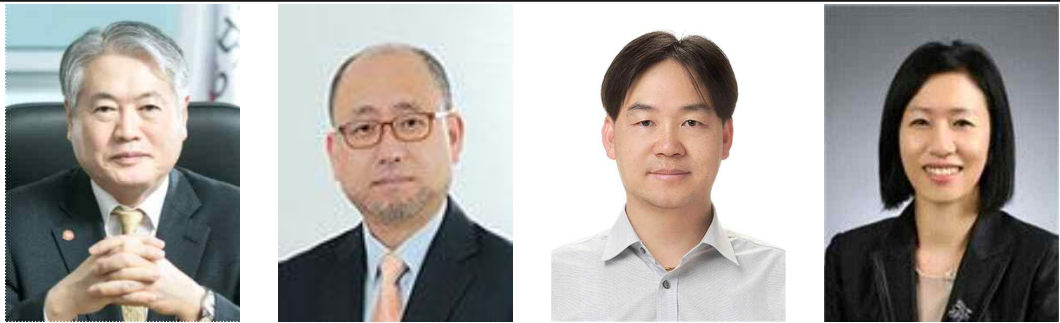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2)

“고령장애인 통합지원 모델 필요성과 통합 돌봄”

(진행) 김동호 정책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사무국장(1993~2005)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이사(2004~2006)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2005~2006) -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초안위원(2003~2006) - UN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6차, 7차, 8차)한국정부대표단 정부대표(2005~2006) -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장·장애인권익지원과장(2006~2011) - 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사회문제담당관(2012~2018) - 세계농아인연맹총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2020 ~2023) - 장애주류화정책포럼 대표(2020 ~현재)
---	--

패널



김용익 이사장
(돌봄과미래)

김진우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종혁 교수
(충북대학교
의과대학교)

서해정 센터장
(중앙장애인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

4) 2024 장애인 정책 최신티슈 & 추진성과 TALK

- 장애인정책국 주요 사업 추진사항

① 장애인정책과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장애인 종합조사표 개정 관련 연구

② 장애인권익지원과

-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이행방안 수립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 장애인 편의증진

③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 소득지원
-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일자리 등)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 장애인 보조기기지원

④ 장애인서비스과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⑤ 장애인건강과

-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 장애인 건강주치의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 여성장애인 의료지원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2024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연수

[기조강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 골든타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김용익 이사장(돌봄과미래)

지역사회통합돌봄,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

<2024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연수>

지역사회돌봄

- 장애인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

김 용 익

(재) 돌봄과 미래 이사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2024년 11월 22일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Care for All Foundation

차 례

- 장애인 정책에서 돌봄의 의미
- 장애인 돌봄과 노인 돌봄
- 장애인 돌봄의 방향
- 지역 돌봄의 진행 상황

강연의 목적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돌봄통합지원법)'
의 제정에 맞추어
 - 장애인 돌봄의 가능성과 방향을 검토하고
 - 현 상황 분석과 장애인 운동이 해야 할 역할을 모색

장애인 정책에서 지역사회돌봄의 의미



01 기존 장애인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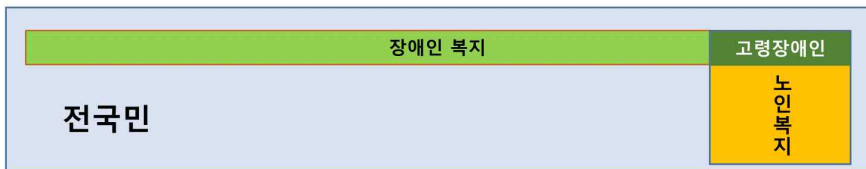
■ 장애인 정책의 기본 구성

- 전국민에 적용되는 제도의 바탕 위에: 소득보장, 건강보장, 교육, 주거/교통 정책 등
- 장애인에게 특화된 각종 정책을 엮어 놓음. 각 정책은 수평적 연계없이 수직적으로 제공
- 각종 할인은 '감세' 지원 형태. 노인요양과 활동지원은 별도 구성



■ 장애인 정책과 노인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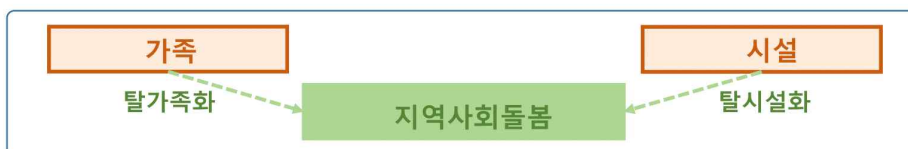
- 장애인정책은 '등록장애인 and 65세 미만'에 적용



p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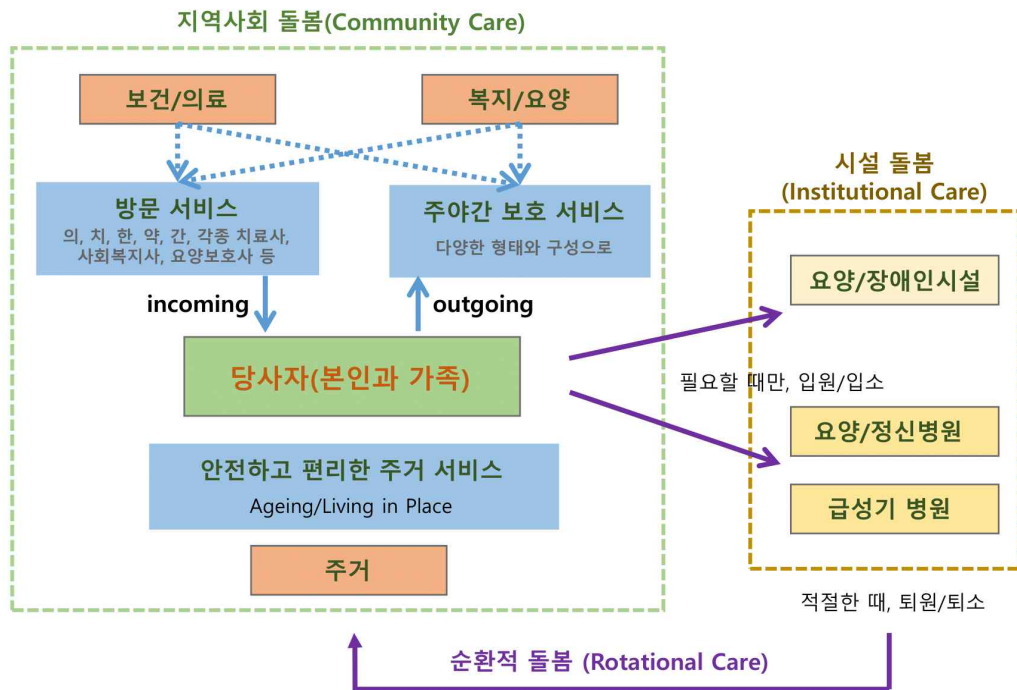
02 지역사회돌봄

- (전달 방식) 방문/주간보호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시설 서비스를 개혁
 - 주치의 → '방문' 의료/재활을 통한 단골의사 관계. 장애인을 찾아가는 방식
 - 동네마다 주간보호센터. 의료/재활 서비스 강화 장애인이 사는 지역에서
- (통합성/비빔밥) 수요자의 욕구 needs를 통합적으로 판단하여 맞춤형으로 제공
 - 의료/재활-복지의 통합적 판정 및 연계된 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의 지원과 '사회활동' 지원의 강화
- (목표/효과) 탈시설화, 탈가족화. 독립성, 자기결정권 강화
 - '살던/살아야 할 곳에서의 삶'
 - 돌봄 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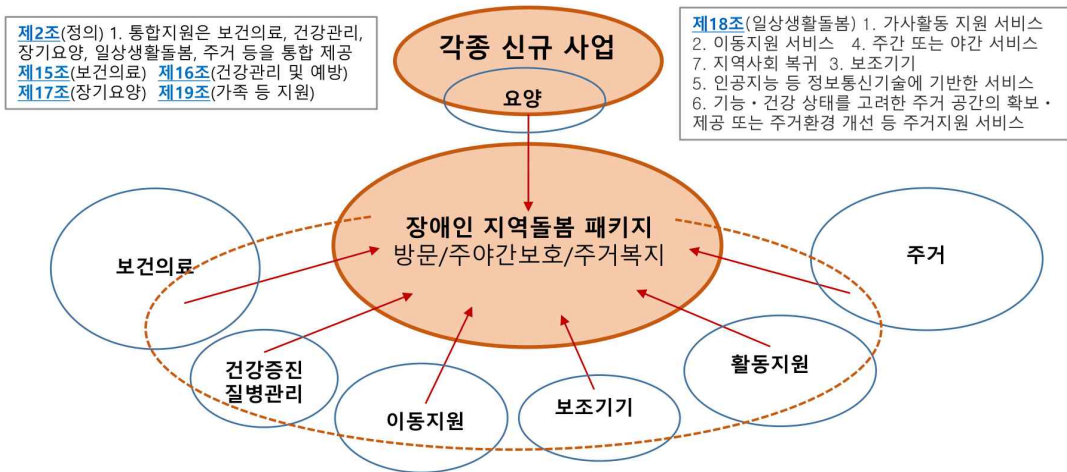


page 6

■ 지역사회돌봄의 구성



■ 전략: 기존 사업의 재구성과 신규 사업 추가



- 각 분야 사업 중 돌봄에 포함시킬 서비스의 목록이 필요
- 이들을 개선, 통폐합하고 일부는 폐기해야 할 수도 있겠음
- 돌봄을 목적으로 추가로 만들어야 할 서비스도 많을 것임. 장애인의 경우 요양서비스

장애인 돌봄과 노인 돌봄 왜 달라야 하나?



문제의 제기

- 흔히 '장애인 돌봄'은 '노인 돌봄'의 개념을 준용하면 된다고 생각함. 그래도 되나?
- 돌봄법도 당초 노인 위주로 설계되었고, 후에 장애인을 추가함. 하위법령에 장애인 조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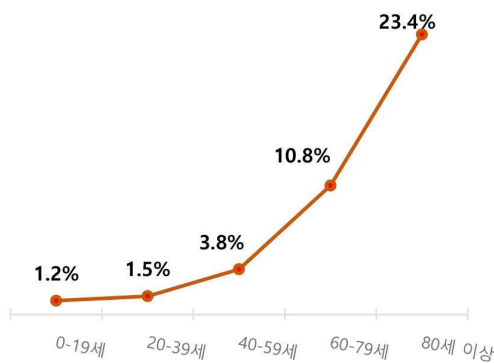
전 연령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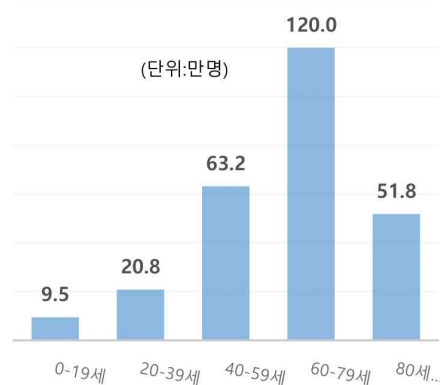
01 전 연령층에 장애 발생



연령군별 장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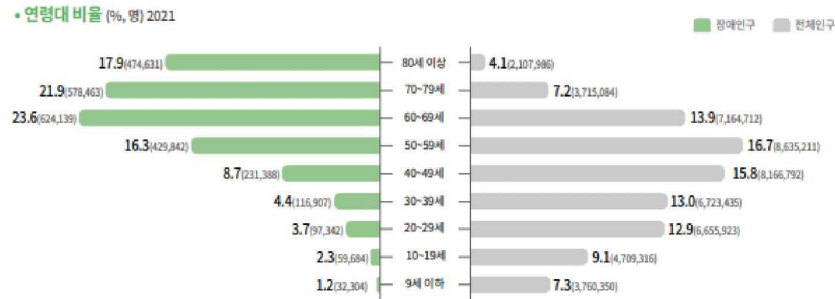
만명 연령군별 장애인수



<자료> 2022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장애인 등록 현황(보건복지부), 2022년 12월 31일 기준

- 노인은 65+, 장애인은 전 연령에 분포
- '젊은' 장애인 돌봄이 필요
- 일상생활 지원과 사회활동 지원이 필요. 교육, 취업, 문화 생활 등

02 높은 고령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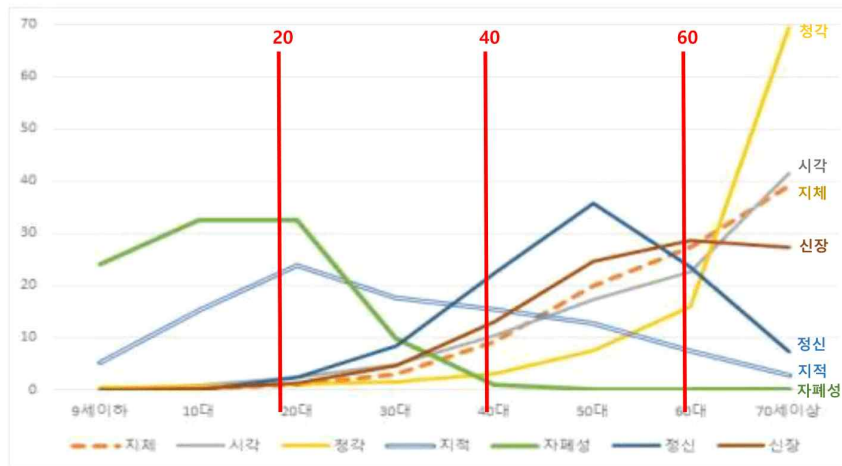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2), 한눈에 보는 2022 장애인통계

- 장애인의 연령별 인구 구성은 극단적인 '역 피라미드' 형
 - 장애인은 총인구보다 7년 정도 수명이 짧지만, 노인층에서 신규장애인이 다수 발생
- 고령장애인은 140.1만명, 52.8%. 장애와 고령의 '이중부담'
- '심한 장애'를 가진 고령장애인만 해도 36.9만명, 37.5%

필요/수요의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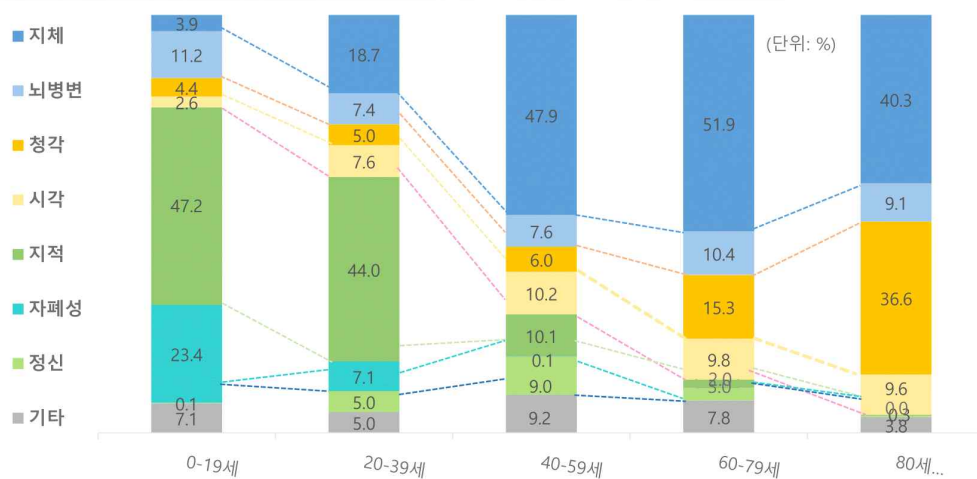


01 연령에 따른 장애유형 구성의 변화



<자료> KOSIS, 장애인 통계(2019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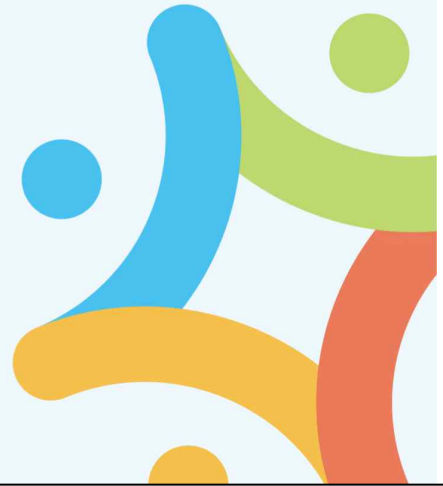
- 정신장애(자폐성, 지적, 정신)군은 '조기노화' 현상이 심함
- 65+ 에서는 감각장애. 특히 청각장애가 급증
- 장애종별, 중증도, 원인과 연령에 따른 다양한 욕구가 발생
 - 노인과는 욕구의 종류가 다름
 - 장애인의 집단별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장애인 돌봄의 출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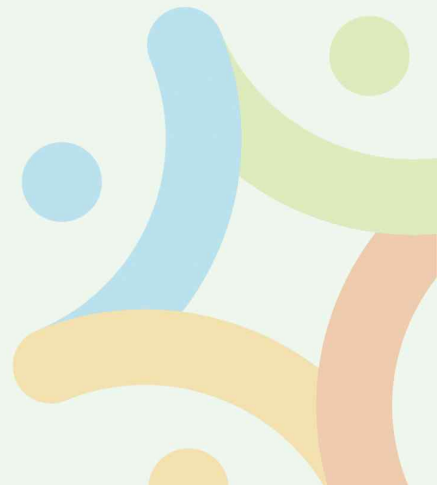
<자료> 장애인 등록 현황(보건복지부), 2022년 12월 31일 기준

- 연령군 별로 장애유형 구성에 변화가 큼
 - 0~39 : 정신장애(자폐성, 지적, 정신) 위주
 - 40~79 : 지체, 뇌병변 등의 비중 증가
 - 80+ : 감각장애 증가. 특히, 청각은 80.7%가 노인

장애인 돌봄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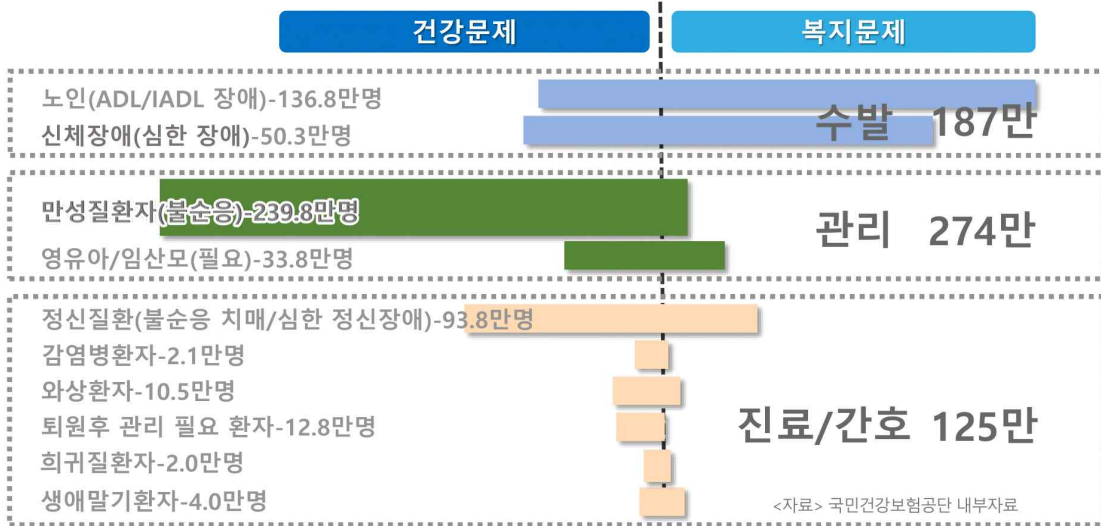
잠재적 수요 추정



01 지역사회 돌봄의 전체적 수요

■ 총 586만 명에 달함(2019년 말 기준)

(단위: 인년 person-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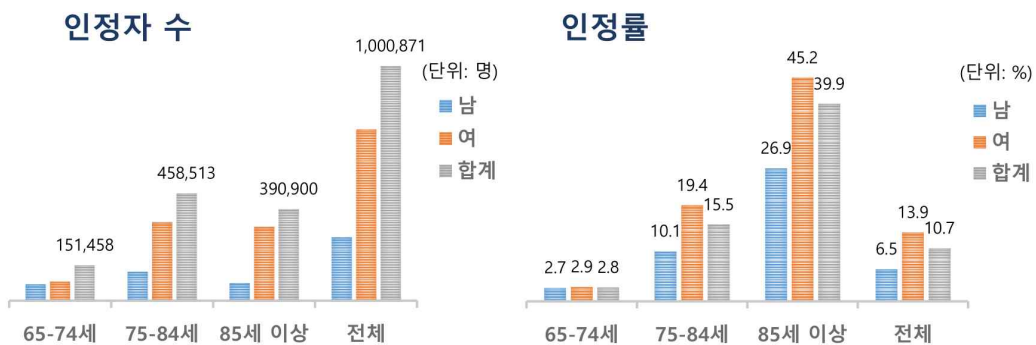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 위 집단은 대부분 새 돌봄법에 포함. 단, '영유아/임산모'는 제외됨
- 각종 질환자 중 '노인과 장애인'이 아닌 자는 제외될 수 있음

02 돌봄의 대상이 될 노인/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인정자 ✓ 100만 명



<자료> 장기요양보험(<https://longtermcare.or.kr>), 운영센터별 등급판정현황(2023년 3월 기준)
행정안전부(<https://jumin.mois.go.kr>), 주민등록 인구통계(2023년 3월 기준)

- 노인의 약 10~15% 정도가 돌봄을 필요로 함
- 향후, 인정자 수는 대폭 늘어날 것임. 노인과 후기고령자의 증가, 적용 범위의 확대 등

■ 심한 장애인 ✓ 100만 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장애유형	심한 장애	
				인원	(단위:명, %)
신체적 장애	외부장애	외부로 드러나는 장애	지체	228,241	23.2
			뇌병변	142,271	14.5
			안면	1,386	0.1
		감각 장애	청각	88,668	9.0
			언어	11,619	1.2
	내부장애		시각	46,427	4.7
			신장	79,225	8.1
			심장	3,873	0.4
			간	722	0.1
			장루, 요루	1,610	0.2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뇌전증	1,914	0.2	
		호흡기	10,981	1.1	
		지적	225,708	22.9	
		자폐성	37,603	3.8	
		정신	103,680	10.5	
합계				983,928	100.0

<자료> 보건복지부(2023), 장애인 등록 현황(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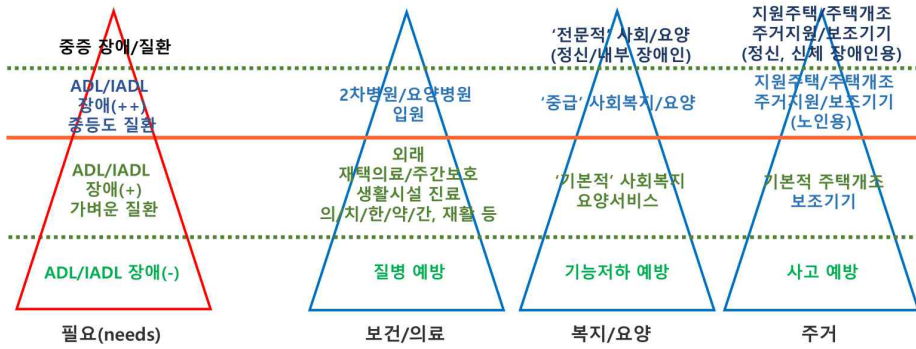
- 장애인이 모두 돌봄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임.
‘심한 장애인’들이 주로 돌봄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측
- 장애 판정과는 별도의 ‘돌봄 판정’이 필요

구성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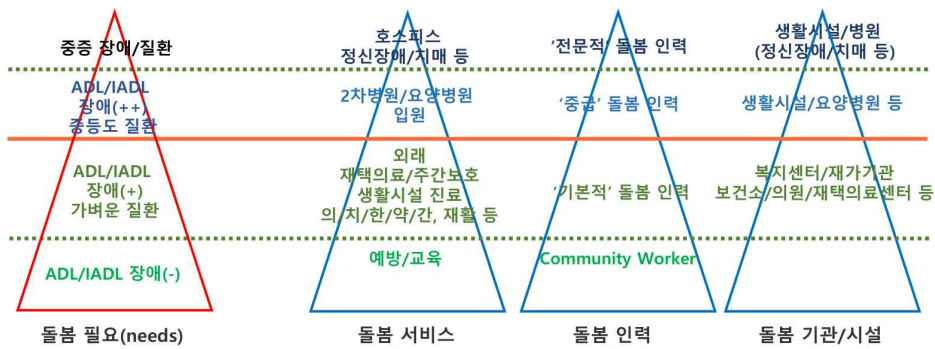
01 '욕구 needs'에 기반한 서비스 구성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1.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



- 연령과 장애 종류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구성이 필요
- 현재는 노인 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단순한 사업으로 구성
- 향후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난이도 차이도 큰 사업을 추가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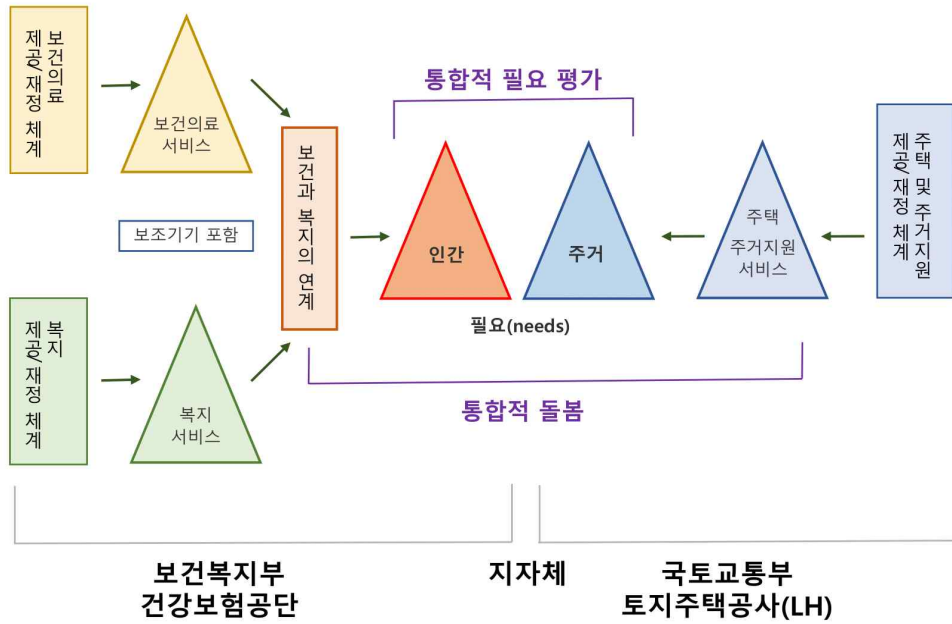
■ 욕구-서비스-인력-시설의 일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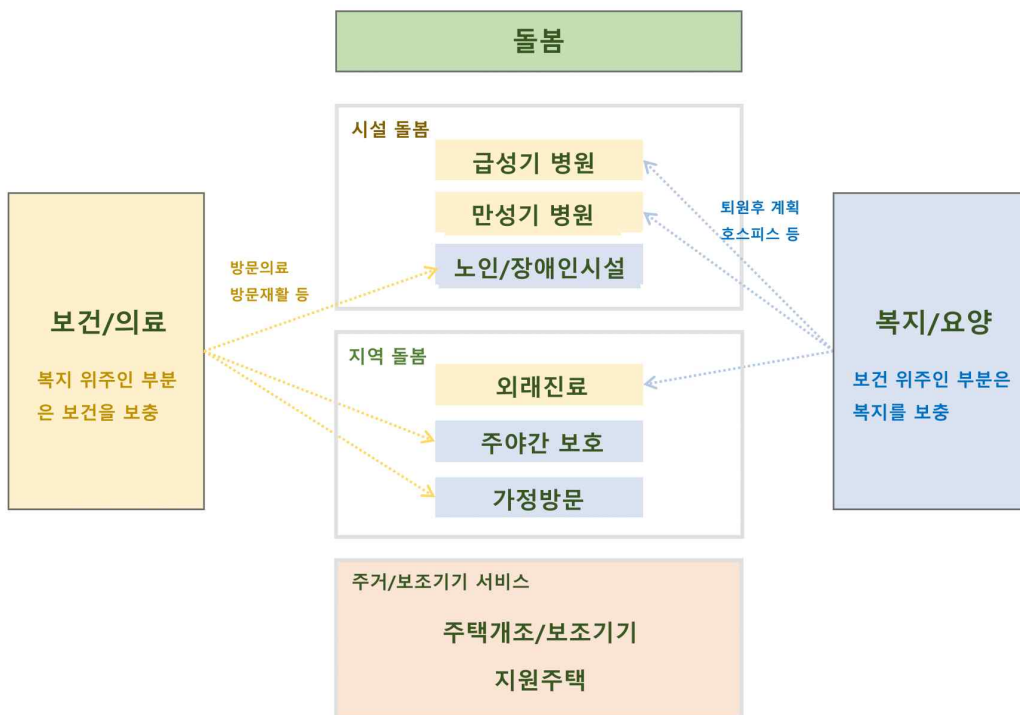
- 연령과 장애 종류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구성이 필요
- 그러한 서비스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인력, 조직, 재정의 뒷받침 필요
- 각 직종의 역할의 할당과 조정이 필요
- 지금은 들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포함되어야 할 제공자도 파악해야

→ 욕구에서 서비스를 도출하는 과정은 비교적 쉬우나
 서비스를 누가, 어느 시설에서 제공하느냐 하는 것은 다양한 선택이 가능
 구성의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큼

02 돌봄 관련 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상



■ 보건과 복지를 돌봄으로 혼합



03 현재 정책의 적합성 adequacy?

■ 노인은 동질적인가? 현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까?

- 노인 요양과 의료는 현재대로 해도 되나?
- 노인도 연령과 질병 유무에 따라 차이가 큼
- 기능 유지, 회복과 복귀를 위한 **재활**은 얼마나?
- 노인의 '참여/활동'의 욕구를 인정?
- '개성을 인정받을 욕구'를 얼마나 인정?
- 노인 돌봄도 다시 설계해야

- **수명 연장에 따라 노인도 구분이 필요**
 - 전기 고령자 65-74
 - 중기 고령자 75-84
 - 후기 고령자 85+

■ 장애인은?

- 노인과 같은 질문 가능
- 장애종별, 중증도별, 원인별 돌봄 욕구는 노인보다 매우 다양
- **재활, 참여/활동, 개성 존중의 욕구**가 노인보다 강렬
- 노인 돌봄을 준용할 수 있나? 아니다.
- 지역 돌봄의 개념 안에서 장애인 돌봄은 별도의 사고가 필요. 준비는 훨씬 지체되어 있음

방문서비스/요양/활동지원



01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 활동지원/장기요양

- (장애인) 활동지원 = (노인) 요양/수발 + 사회적 활동 지원
- ✓ 장애인 정책의 목표가 '기능적 제약'의 복구? '사회적 제약'을 넘는 참여 보장?

■ 활동지원의 지적된 문제점

- 장애인이 고령화될 때, 활동지원 중단 → 개선. 기득권 인정 수준
- 낮은 이용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6.9%, 노인장기요양보험 7.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 활동지원 시간: 제약
- 활동지원 인력: 처우, 구성(50대 여성), 기능, 매칭 등

■ 근본적 문제 제기

- 활동지원에는 사실상 '장기요양'의 개념이 부족. 장애인은 '일상생활' 지원이 불필요한가?
- 장기요양에는 활동지원 개념이 없음. 수명이 늘어난 노인에게 '사회생활' 지원이 불필요한가?

■ 활동지원/장기요양 법령 비교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 및 노인성질환(조기노화), 일상생활, 장기요양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치매, 뇌혈관질환/중풍후유증, 파킨슨증/진전, 근위축/다발경화증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활동지원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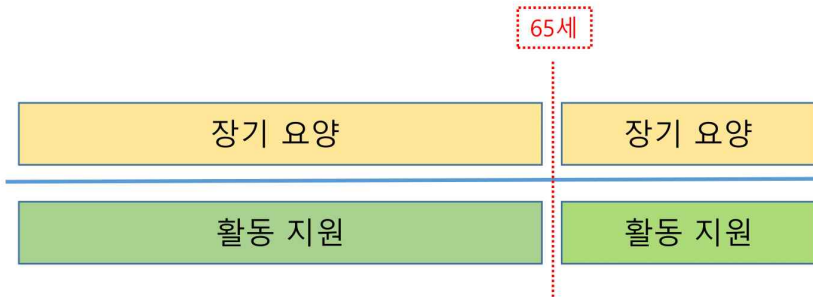
3.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 및 장애인, 일상생활, 돌봄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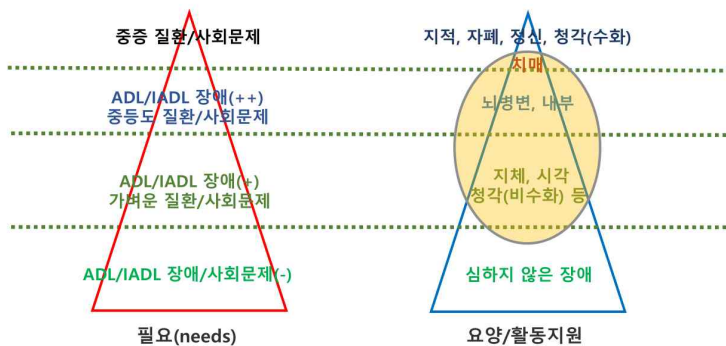
■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의 동시 제공



- 장애인과 노인 모두에게 필요에 따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지원을 실시
- 지원 내용과 시간은 통합적 기준으로 판정된 필요도에 따라 적절히 제공

※ 발달장애인과 같이 특수성이 있고 '자립지원' 등 정책 방향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장애 돌봄과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

■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의 내용 다양화



- 필요의 종류에 따라 난이도 높은 서비스를 추가 개발
- 서비스 난이도에 따라 수가 다양화, 교육 개선에 반영, 알선 시 전문성 참고

02 방문서비스의 구성

■ 방문의료

- 의사 - 방문진료, 진단, 처방, 환자교육
- 간호사 - 방문간호, 질병관리, 보건교육
- 영양사, 임상심리사, 임상병리사 등
- 약사 - 방문복약지도, 다제약물관리
- 치과의사/치위생사 - 구강보건, 치과치료
- 한의사 - 한방진료



<자료> 김기유, 지역사회의료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024.10.29



<자료> 일본 Morita사(2020), Portacube 소개 책자

■ 방문재활: 장애인 돌봄에서는 특히 재활이 중요

- 재활의학 전문의/ 의사
- 물리치료사 - 신체 기능의 회복
- 작업치료사 - 일상생활 기능 복구
- 건강운동관리사 - 안전한 근력 복구

■ 방문복지

- 사회복지사 - 소득, 가족 관계, 주거 상황 등 점검과 대응
- 영양보호사/활동지원사 - 일상생활 지원, 사회활동 지원

■ 각 직종별

- 의사
 - 의원, 재택의료센터, 보건소 등이 가능. 의원의 참여 확대가 중요
 - 병원을 재택의료에 참여시킬 것인지? 제한적으로?
 - 재택의료에 영양사, 임상심리사, 임상병리사 등의 연결 방식은?
- 치, 한, 약 등
 - 개원/개국, 보건소 등의 치의/치과위생사, 한의, 약사 등 참여가 필요
 - 구강보건, 방문약료, 한방의료 등 소홀해 지기 쉬운 영역에 대한 지원 필요
- 간호인력
 - 다수의 간호사가 참여해야. 각 의료시설이 고용한 간호사만으로는 부족
 - '지역단위'로 방문간호 서비스 공급을 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가 필요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
- 사회복지사
 - 신청·발굴, 조사, 판정 등의 업무 외에 '방문 사회복지사'가 필요
- 영양보호사/활동지원사
 - 새로운 서비스에 맞추어 서비스 구성, 훈련 등을 다양화
 - 이에 맞추어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함

제15조(보건의료)

1. 진료서비스
2. 간호서비스
6. 방문 구강관리
7. 복약지도

➡ 인력의 조달 뿐 아니라 팀원의 구성이 필요

■ 각 사업별



- **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 새로운 돌봄 체제에 맞게 노인, 장애인 돌봄의 전면 재조정 필요
 - 예방적 기능,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 기능 강화 필요
- **주거/보조기기**
 - 주거와 보조기기 급여 확대가 있어야 AIP가 가능. AI 등 추가
 - 주거와 보조기기 전문인력과 전달체계의 정비가 필요
- **재활**
 - 노인, 장애인, 환자 모두 필요. 병원 뿐 아니라, 주간보호, 방문 등에서도 필요
 - 의사, 재활의학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건강운동관리사 등이 팀을 이루어야
- **호스피스**
 - 호스피스의 급여 확대. 참여 병원 확대 전략
 - 가정형 호스피스의 확대 방식은?
- **퇴원환자 연계**
 - 참여 병원 확대 전략
 - (지금처럼) 요양병원 전원이 아니라, 집에서 돌보는 체계가 필요
- **건강관리/질병예방**
 - '노쇠,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을 예방'
 - 지자체, 보건소가 건강보험공단 및 질병청의 질병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제17조(장기요양) 다음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
 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2.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3. 그 밖의 서비스

제18조(일상생활돌봄)
 1. 가사활동 지원 2. 이동지원
 4. 주간 또는 야간 서비스
 7. 지역사회 복귀 3. 보조기기
 5.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기반 서비스
 6. 기능·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서비스

제15조(보건의료)
 3.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5. 호스피스 사업

제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
 ①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던 자가 퇴원 또는 퇴소를 하고자 할 때 이후에도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제16조(건강관리 및 예방 등)
 ① 노쇠,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예방, 완화
 ②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 통합지원 기반조성

주간보호



01 주야간 보호

■ 주간보호 서비스의 대대적 확충과 다양화

- 생활지원, 기능증진 훈련, 목욕, 급식, 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 의, 치, 한, 약, 간호사 등의 주기적 방문 필요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운동처방사 등 상주/방문
-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결합: 음악, 미술, 시, 수필, 연극, 영화, 사진, 체육활동 등

(현재) 노인 2,618개소, 장애인 1,569개소 (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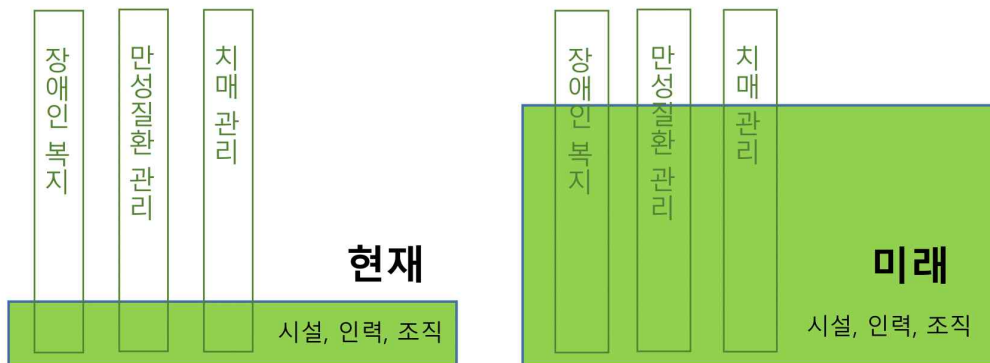
■ 야간/단기보호

- 가족이 일이 있을 때 야간 포함하여 노인/장애인을 맡아 주는 역할
- 단기 보호 확대 필요

(현재)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연 9일 이내. 전국 257개소 (2023년 기준)

<자료> KOSIS, 2023

02 주야간 보호를 장애인/노인 공용으로?



- ❖ 공동의 인프라가 없으면
 - 각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시설, 인력, 조직을 새로 구성해야

- ❖ 공동의 인프라가 있으면
 - 기존의 시스템 위에 각 사업의 프로그램만 얹으면 됨

- 주간보호는 노인/장애인이 공동사용 가능한 범위를 시범사업 등으로 정해야
 - 노인과 지체 등?
- 단기보호는 공동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주거 지원



01 주거복지와 주거지원의 개념



■ 주거복지

- 인간의 주거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진 상태 또는 이러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활동

■ 주거지원

- 주거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이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고 유지함으로써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
- 주거 안정성
 - 안정적인 '집'의 확보
 - 주택공급, 주거비 지원 및 주택금융, 주택개조지원 등
- 주거 편의성
 - 주거 및 일상생활과 사회참여활동과 관련한 각종 훈련이나 편의 지원
 - 주택에 관한 정보, 이사, 가구 및 생활용품, 주택의 수리나 보수 지원 등
 - 일상생활기술 지원/훈련, 청소와 세탁, 시설안전관리, 각종 서비스 연계, 사회참여활동 지원 등

<자료> 서해정 등(2021.10), 지역사회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기준 개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page 40

02 주거 지원

1. 장애인/노인 주거의 스펙트럼



2. 장애인 주거 지원

■ 필요성

- 노인 이상으로 장애인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한 집'의 필요성이 큼
- 주거 복지는 모든 장애인의 공통된 욕구. 일부 장애인에 국한된 과제가 아님
-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화' 뿐 아니라, 재가 장애인의 '독립적 생활'과 가족 부담의 '탈가족화'를 위해서도 주거 지원이 필요

■ 주거 지원

- 안전하게 지어진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집'과 인간적 생활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 지원이 바람직
- 전체 장애인 중, 주거 지원이 절실한 두 집단
 - '지체/뇌병변 집단'은 안전한 건축적 구조와 함께 주거지원서비스가 필요
 - '정신장애 집단'은 섬세한 주거 지원이 매우 중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장애유형	심원 장애	
				인원(명)	비율(%)
신체적 장애	외부장애	외부로 드러나는 장애	지체	228,241	23.2
			뇌병변	142,271	14.5
		인언	1,386	0.1	
		감각 장애	청각	88,668	9.0
			언어	11,619	1.2
			시각	46,427	4.7
	신장		79,225	8.1	
	내부장애	심장	3,873	0.4	
		간	722	0.1	
		장루, 요루	1,610	0.2	
		뇌전증	1,914	0.2	
		호흡기	10,981	1.1	
지적		225,708	22.9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37,603	3.8	
		정신	103,680	10.5	
		합계	983,928	100.0	

37만 명 (circled in red in original image)

37만 명 (circled in red in original image)

03 장애인과 노인 주거지원 주요 대책

■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

-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구현하는 디자인
- 낮은 수준의 기준, 개조의 가능성 확보

■ 동네의 환경개선. 이동성(Mobility) 보장

- 유모차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보도
- 건물들의 출입구, 승강기, 화장실 등
- 보행자 우선 운전 규칙, 여유 있는 보행자 신호
- ✓ 중요 지역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시가지 전체를 변화시켜야 함
-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등도 필요

■ 주택 개조(Housing Adaptation)

- 안전과 편리를 위해 집의 구조를 바꿈. 문의 크기, 문지방, 안전손잡이, 화장실 등
- ADL/IADL 장애, 질병이 있는 재가 노인, 심한 재가 장애인 등
- ✓ 새마을 사업의 부엌 개량, 변소 개량 사업과 유사하게 추진 가능

■ 지원 주택(Supportive Housing)

- 물리적 공간인 '집'과 인간적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 형태
- 서구에서는 노인인구의 2-10%에 공급. 일본은 총력을 다해 공급을 늘리는 중
- ✓ 노인, 장애인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규모와 형태가 가능

04 주택개조와 지원주택

1. 주택개조

● 신체 기능의 변화에 따라

구분	신체기능	필요 주택개조
감각기능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천히 밝아지는 조명장치 설치 • 계단 단차가 확실히 보이는 조명 설치 • 단차 제거 공사 실시 등
	후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감지장치 부착 • 가스자동감압장치 설치 등
	청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빛으로 알 수 있는 전화-인터폰 설치 등
	촉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 난방 설치 • 냉난방 자동제어장치 설치 등
신체기능	기억력/사고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납공간 개선 등
	근력/지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납공간(선반, 부엌 등) 지수 조절 • 동작상 필요한 지수 재검토(스위치, 손잡이 등) 등 • 발에 걸리는 단차 제거 •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로 교체 등
	앞기/일어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가 조절되는 의자 •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손잡이 설치 등
	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동선에 안전손잡이 설치 •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로 교체 등
생리기능	배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실 가까이 욕실 및 화장실 배치 • 야간조명등 설치 등
	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이 없도록 침실 방음 성능 개선 등

● 기능 저하의 정도에 따라

구분	일상생활 어려움 (물리적 장애요소)	물리적 장애요소에 따른 주택개조 예시
단독 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공간의 단차 및 경사면 발생으로 인한 어려움 • 신체적 허약 등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넘어짐 • 낮은 곳에는 손이 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차 • 안전손잡이 • 도달높이 • 조작범위, 조작설비 • 유효폭, 모서리 확보, 활동공간, 장애물 등 • 바닥재질, 마감형태, 안전확보
클러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리를 굽히는 행동 등이 어려움 • 보조기구 이용에 따른 유효폭 부족 • 바닥면이 미끄러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달높이, 수납공간, 조작범위, 무신조작 • 단차 • 바닥재질 • 안전손잡이 • 개폐공간, 조작설비
좌식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부도달높이 및 눈높이가 매우 낮음 • 좌식생활에 따른 바닥면 단차 • 미끄러운 바닥면에 따른 안전사고 • 대변기 등 설비이용에 따른 손잡이 • 출입문 문고리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달높이, 수납공간, 조작범위, 무신조작 • 단차 • 바닥재질 • 안전손잡이 • 개폐공간, 조작설비
휠체어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접근로 높이 변화 이용 어려움 • 실내 바닥의 높이변화, 2cm이상 높이차이 이용 어려움 • 통과 유효폭 등에 따른 활동 제약 • 눈높이, 상체 도달범위가 낮고 좁음 • 상하부 도달범위가 제한적이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옮기 어려움 • 너무 높거나 낮게 설치된 스위치 및 조작기 사용불가 • 이동 및 거주공간의 생활공간 확보 • 출입문의 이용 및 이동 • 미끄러운 바닥재질에 따른 안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단차 • 내부단차, 안전확보 • 유효폭, 장애물 • 개폐공간, 수납공간 • 도달높이 • 조작범위, 무신설비, 조작설비 • 활동공간, 하부공간 • 측면접근 • 바닥재질(안전쿠션재질 외 재료 사용), 마감형태, 안전손잡이
와상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공간의 온도 및 습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의료용 침대 및 욕창방지 매트 등이 필요함 • 전등 및 설비의 조작 • 목욕 등을 위한 활동공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개선, 쾌적성 • 의료기기 지원, 안전확보 • 무신설비 • 단차, 유효폭

<자료> 행정안전부(2021.7), 2021년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

■ 주택개조/보조기기 사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2. 지원주택

■ 개념

- 1-2인 가구용 장기임대주택이면서
- 물리적 공간인 '집'과 인간적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

- 독신/부부
- 장기임대



주거
 +
 지원

■ 전략

- 실버타운과 유사. 중산·중하층도 입주 가능한 '사회주택'으로 대량 공급
- 서구에서는 노인인구의 2-10%에 공급. 일본도 총력을 다해 공급을 늘리는 중. **한국의 소요 추정수는 18-73만 호**
- LH의 장기임대주택에서 '복지주택' 할당

<자료> 강영관 '서울시, 노인지원주택 전국 최초 공급 ... 2022년까지 190호', 아주경제 2020.4.30

<자료> 강하림 등(2020),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지원주택 필요량 추정 연구, 건강보험연구원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Care for All Possibilities

Slogaven Valby
시각장애인
지원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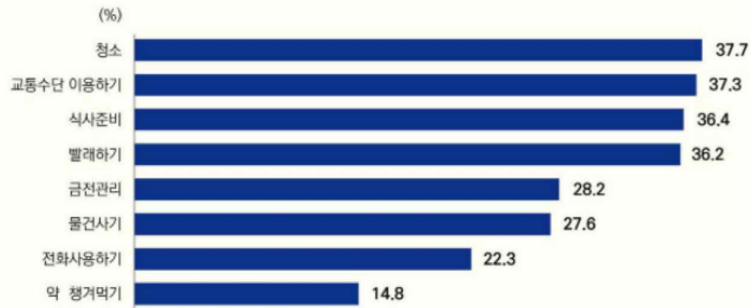


<자료> 직접 촬영

05 주거와 연결된 사회서비스

■ 주거내 지원(in-house)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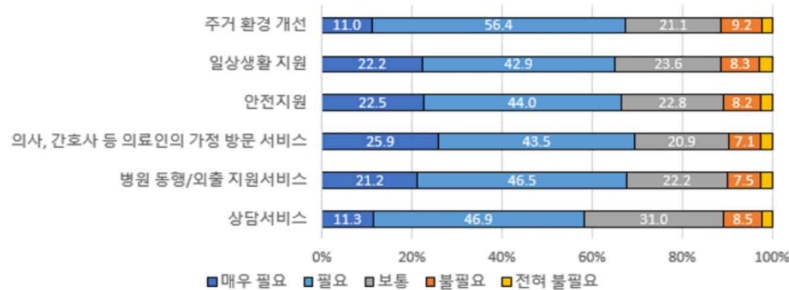
- 입주자의 필요(심리, 건강, 사회, 경제 상태 등)에 따라 주거단지 내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 지원주택이나 그룹 홈의 주거 형태일 때 해당



<자료> 박미선(2021.9), 지원주택을 통한 주거약자 지원방안, 2021년도 제3회 통합돌봄 2024 비전포럼

■ 지역사회 기반(community-based) 서비스

- 정부 및 민간이 일반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보건, 복지, 주택 관리 등의 서비스
- 돌봄에서는 '방문서비스'와 '주야간 보호 서비스' 패키지화



<자료> 박미선(2021.9), 지원주택을 통한 주거약자 지원방안, 2021년도 제3회 통합돌봄 2024 비전포럼

보조기기/의료기기



01 보조기기/의료기기



■ 필요성

- 지역사회돌봄이 확대되면 노인/장애인/환자의 보조기기의 공급도 확대해야 함
- 모니터링을 위해 전문/가정용/착용형 의료기기 급여도 확대해야

■ 과제

- 전통적 보조기기/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음. 반면 AI 등은 지나친 강조
- 건보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상이한 명칭과 분류. 통일이 필요
- 보조기기와 주택개조는 짝을 이루어야 효율적
- 전달체계의 부재로 재원의 낭비. 전달체계 개편 필요
- 보조기기센터는 유명무실. 전달체계의 일부로 위상 부여 필요
- 물자 생산의 국산화 노력 필요

02 장비·물자·정보

1. 장비와 물자

■ 침대

- 전동 침대 60만대
- 욕창매트리스 12만개
- 와상, 중증장애인 중 신체움직임 저하자



■ 보조구·복지용구

- 휠체어 32만대 추가
- 보행 보조기 68만개 추가
- 각종 일상생활 보조기(식사, 설거지, 청소 등)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page 53

2. 정보와 ICT 산업

■ 방문보건/복지 관련

- 방문진료, 원격협진, 건강 관리, 복지, 영양 등



■ 주택 및 요양시설 관련

- 입주자 위급상황 모니터링



■ 일상생활 활동 보조 관련

- 일상 활동을 보조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장치



page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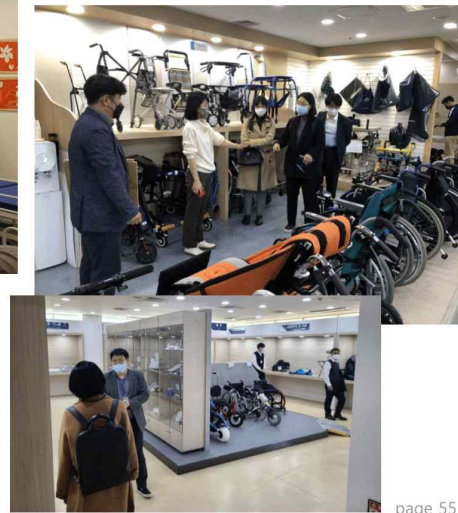
03 보조기기 센터(Assistive Technology Center)

- 장애인들이 다양한 보조기기를 체험해 보고 적절한 것을 선택
-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의 전문적 도움
- 보조기기 유통체계의 핵심으로 변경 필요

< 덴마크 코펜하겐 >



< 한국 경기도 >



지역사회돌봄의
진행상황



01 진행 상황

■ 중앙

- (의제화) 문재인 정부 초, '돌봄'의 의제가 제기되고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정책 과제가 설정되는 단계를 거침
- (공통 공약)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양 진영의 공약으로 제시됨. 민주당의 '5대 돌봄'에 비해 국힘의 공약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음
- (현 정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새로운 시범사업을 시작. 돌봄 정책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임. 인프라를 '민영화' 하려는 시도가 나타남
- (시범사업) 12개 지역으로 진행 중. 복지부는 20여개로 확대 시도
 - <기간> '23.7~'25.12(2.5년), <예산> '23년 기준, 32.4억 원(국비 보조율 50%)
 - <지역> 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부천시·안산시, 진천군, 천안시, 전주시, 여주시, 의성군, 김해시

■ 지방

- (지자체) 광역, 기초 80여곳에서 자발적으로 돌봄을 추진
- (시민사회) 사회적 의료협동조합, 한살림 등 생협, 다양한 시민단체도 시도 중

02 돌봄법의 제정

■ 법의 제정과 관련 제도 정비

- (법 제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4.3.26, 시행 2026.3.27.]
 - 돌봄의 목적과 성격, 추진방향, 대상과 제공자,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등
 - 계획수립: 복지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 자치단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사업내용: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가족 등 지원
 - 지원절차: 신청, 조사, 퇴원환자 등의 연계, 종합 판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제공
 - 기반조성 및 비용지원: 지원협의체, 전담조직, 정보, 전문인력, 전문기관 등
 -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즉시 발효)
- (의미) 지역돌봄에 대한 목적, 내용, 수단을 규정하는 최초의 법. 의제화에서 법제화로
- (시행령 제정) 2년간 시행령, 시행규칙 준비 예정. 법의 실질적 내용을 규정하는 중요한 의미. 정치권 및 시민사회, 등이 적극 참여 필요
- (관련 법 제·개정) 보건의료, 사회복지, 주거, 교통 등 유관 법률의 대대적 제·개정이 필요. 관계 법은 약 30여개로 추정
 - 의료법, 지역보건법, 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주택법, 교통약자법 등

03 돌봄법 제정에 따른 상황 변화

■ 지역돌봄 사업의 의무화

-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돌봄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생김
- (현재) 시범사업형 돌봄 → ('26.3.) 전국적 돌봄 → (언제?) 전국민 돌봄

■ 지역돌봄에 대한 관심의 증폭 예상

- 정치일정
 - '26.3. 법 발효 → '26.6. 지방선거 → '27.2. 대선
 - 논의의 증폭
 - 향후 2년간, 법의 준비와 지방선거 준비로 정치권과 지자체의 관심 증가. 이미 각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음
 - '26.6. 지방선거에서는 돌봄 관련 공약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6년 하반기, 지선 공약을 걸러서 대선 공약으로 이어질 것임
- '26년은 지역돌봄 체계 구성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측

04 돌봄법 제정 이후의 과제

■ 돌봄법의 추가적 구체성 확보

- 시행령/시행규칙 1.5년간 정비의 시간
-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등을 통한 구체화
- 지자체별 조례 제정으로 지역 특성 반영

■ 광범위한 법령 정비의 필요성

- 특별법
 - 보건, 복지 사업법의 상위에 있어 '돌봄 중심의 종합 정리'가 가능하지만
 - 충돌의 가능성이 큼. 현실적으로는 타법과의 조정이 필요
- 관계 법령의 정비: 조직적 협조가 필요
 - (복지위) 보건의료, 사회복지, 사회보장, 재정 및 예산 관련법
 - (행안위) 지방행정조직, 지방공무원 등 지방자치 관련법
 - (국토위) 주거, 교통 등 사업 관련법
 - (환노위) 돌봄 노동자 관련법
 - (문체위) 재활 및 건강관리운동 관련법

■ 갈등 요인과 조정 필요성

- 직종 간
 - 보건과 복지, 보건분야의 각 직종, 복지분야의 각 직종
 - 지역돌봄의 활동이 다양화하면서 기존 활동을 재구성하고 신규 활동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관련 집단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요인이 큼
 - 정책에 대한 반발
 - 탈시설화, 공공성 확보, '신규 업자'의 진출 등과 관련하여
 - 정부기관 간 업무 분장
 - 중앙-광역-기초 간
 - 지자체-건보공단 간
 - 복지부-국토부-노동부-산자부-문체부 등
- ➔ 향후 2년 간의 논의가 지역 돌봄의 제도의 원형을 형성할 것임
 지금이 '경로 path 설정'의 시기. 경로의존성에 따라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음

05 남아있는 과제

■ 자원과 전달체계

	법과 전달체계	자원
노인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예산
		건강보험 건강증진기금 주거 예산 등

- 현장에서 노인과 장애인은 상이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혼합되기 어려움
- 보건과 복지도 분리, 경쟁 상태

■ 법의 미비점

- 법 전체가 노인 위주. 장애인 관련 조항을 보강 필요
- 일부 문제 조항 재검토

제10조(신청·발굴 및 조사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중략)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자, 「(중략)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 등 (중략) 통합지원이 누락되지 아니 하도록 (중략) 발굴하여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후략)

- 하위법령과 관계법령에서 장애인 관련조항 정비

06 장애인 돌봄의 준비 정도

■ 주요 과제

- 장애계에서 돌봄의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 토론이 필요
- 장애인 돌봄의 개념과 방향에 대한 논의의 전개와 합의
- 장애인 돌봄의 욕구 파악: 장애종별, 중등도별, 원인별, 연령군별
- 서비스, 인력, 조직, 재원의 개편방향에 대한 합의
- 지역 돌봄 전체 구조에서 노인과 장애인 돌봄의 조율

■ 노인/장애인 돌봄 준비 정도

	보건/의료	복지/요양
노인	△	○
장애인	X	X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전국민돌봄보장을 추진하는
사회운동단체입니다

감사합니다



[라운드 테이블]

고령장애인 통합지원 모델 필요성과 통합 돌봄

- 진행 :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 패널 : 김용익 이사장(돌봄과미래)
김진우 교수(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종혁 교수(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서해정 센터장(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지역사회통합돌봄,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

●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intended for writing a memo. It features a light purple header bar at the top and a white body below it, all enclosed within a thin black border.

2024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연수

[2024 장애인 정책 최신이슈 TALK]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정책현안 & 비전 talk

장애인정책국
주요 사업 추진사항

지역사회통합돌봄,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

'24년 장애인정책국 주요 사업 추진사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24. 11. 22.>

1 장애인정책과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24년 시범사업 개요>

- ◇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
- ◇ (사업규모) 8개 시군구, 210명
- ◇ (사업모델: 활동지원 기반 모델) 활동지원급여 20% 범위 내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 ◇ (이용범위)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르되, 지원 불가 항목* 외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지원불가항목) 주류·담배·복권, 저축·투자, 도박·성매매, 가족돌봄비, 일반 생활비 등 불법적이거나 참여자의 장애와 무관한 지출

□ 추진 경과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지역* 선정(4~5월) 및 참여자** 모집(5월), 개인별 이용계획 수립(6월), 급여개시(7월)
* 서울 강북구, 대전 동서구, 대구 달성군, 부산 금정구, 경기 시흥시,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
** 456명 신청, '24.10.31. 기준 213명 참여(장애유형·연령 고려하여 선정)
- 장애인 개인예산제 민관협의체* 구성('24.12월)하여 의견수렴('24년 3회)
* 장애인단체, 학계 및 정부위원 등 총 16명

□ 향후 계획

- '25년 시범사업 실시(9개 지자체 추가 모집('25.上), 신규모델 적용 예정)
* '24년 시범사업 참여 8개 지자체는 '25.6월까지 시범사업 계속(활동지원 기반 모델)

< 장애인 종합조사표 개정 관련 연구 >

- (추진경과)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 과제*는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23~'27)」에 포함되어 추진 중
* 장애 특성욕구를 반영하는 지표 개발을 통해 서비스 필요도 측정 및 다양한 서비스 적용 목표
- '종합조사 지표 개발' 연구용역* 진행, 제2기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실시('24.6월)
* 시각, 정신, 중복장애 등 장애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욕구(대인관계 유지·발전 욕구 등) 파악을 위한 신규 지표 개발(인제대학교산학협력단 수행, '23.8.~'24.7.)
- (향후계획) 연구결과를 기초로 장애특성,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계 의견 수렴 후 고시 개정 추진('24년~'25년)

② 장애인권익지원과

<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이행방안 수립 >

- (추진 경과) 최종견해의 선언적 성격, 광범위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연구, 장애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견해 79개에 대해 18개 기관에 대한 이행과제 선정
 - 이행과제별 소관부처(부서)에서 연차별 이행계획 수립 중으로, 이행과제 보완 및 소관부처 조정 등 협의 실시
- (향후계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계획
 - 사회적 환경, 장애인 정책의 변화 발전 등을 고려하여, 최종견해 이행의 내실화를 위해 이행과제 보완 및 모니터링 등 실시
 - * 이행상황 점검 과정에서 장애계 의견 수렴 등 실시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

- (추진경과) '09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모니터링 접근법 부재
 - *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07.4. 공포 / '08. 4. 시행)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3년 주기)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21년 첫 실태조사 실시
 -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대상인 모집단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표본조사 실시 및 결과, 결과 활용방안 등 요구
- (향후계획)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수행기관 선정('24.상)
 - 실태조사 수행 및 결과 공표 추진('25.상)

※ 21년 대비 신규 주요 사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23년 시행)에 따른 모바일앱, 키오스크 접근성 편의 제공 의무에 관한 조사 실시
- 법상 모든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특정 영역에 대한 심층 조사 실시
- * 장차법 이행 수준이 낮은 영역에 대한 심층 조사 및 실질적 개선 유도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에서 나타나는 장애인 차별과 관련 이슈 분석

〈 장애인 편의증진 〉

○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년)」수립 준비

- (주요내용) 「장애인등편의법」제12조에 따라, 국가는 시설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토대로 2000년부터 5년마다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 수립·시행
- (추진경과)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수립 전 편의시설 실태 현황 점검을 위한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완료*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08.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된 건축물(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기초로 편의증진 개선과제 도출 및 IT기술을 활용한 편의시설 정보제공(복지로-복지지도)
- (향후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시설 등의 설치율 향상, 편의시설 확충 및 구축방안 제시로 편의시설 설치율을 제고하고 및 확대를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년)」수립 추진

○ (편의시설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개정안 마련 및 법령 개정

- (주요내용)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확대 방안을 제시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대 도모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접근권을 실현 등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

* 시행령 개정을 위한 비용편익분석 등 관련 규제 검토 포함

-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편의시설 대상시설 확대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개정 완료

3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 소득지원 >

- (현황)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및 수당 등 지원 중
 -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24년 단독가구 130만원)에 매월 최대 42.5만원 급여 지원
 - * '24년 전년대비 기초급여 3.6% 인상, 부가급여 월 1만원 인상
 - (장애수당 등) 차상위계층 이하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월6만원) 지급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대상 장애아동수당(월3~22만원) 지원
- ('24년 주요과제) 심한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적정 소득보장 지원방안 검토를 위한 소득·지출 실태 분석 조사 연구 추진(6월~12월)
 - * ▲ 연구책임 : 한국장애인개발원 ▲ 설문조사 : 한국 Gallup 수행

<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일자리 등) >

- (현황)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사회참여 증대를 위해 ▲ 공공일자리(3.2만명) ▲ 직업재활시설(811개소) ▲ 중증직업재활지원(1.7만명) 운영
- ('24년 주요과제) 직업재활 현장에서의 장애인 개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별 지원체계 강화
 - 일자리 지원사업의 장애특성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보급('25년~)
 - * ▲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안내, ▲ 공공의료원 내 환자이송보조 및 청사안내
 - 일자리 현장에서의 산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 반복 산재 발생 기관 대상 예방 교육 등으로 사고예방 노력 강화
 -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 개선('25.1.1 시행)에 대비하여 채용 확대 및 지자체 인건비 지원 협의 등 추진
 - *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 (기존) 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 10명당 1명
직업적응훈련시설 12명당 1명
→ (변경) 모든 유형 8명당 1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 (현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공공기관에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해당 제품·서비스로 구매토록 의무 부여
 - * 최근 우선 구매 실적 ('22)7,005억원(1.01%) → ('23) 7,614억원(1.07%)
- ('24년 주요과제) 공공기관 교육 강화, 우선구매 비율 상향* 등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24.2월) 관련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설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1.1%로 설정('25년부터 적용)
 - 의무구매비율 미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견인을 위한 단계적인 구매비율 상향, 미달성 기관 의무교육 추진
 - * '23년 법정 의무구매비율 이행 기관 585개소(56.3%)
 -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개최(10.10.~10.11., aT센터) 등 장애인생산품 인식개선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판촉과 홍보 지속 확대

< 장애인 보조기기지원 >

- (현황) 저소득층 장애인의 보조기기 활용 확대를 위해 ▲교부기준 개선(1인 1품목→200만원 내 3개 품목) 및 ▲대상품목 확대(38종→42종)
- ('24년 주요과제) 품목 추가확대를 위한 품질관리기준 마련, 보조기기 수리.상담 등 사례관리 강화와 전시체험장 확대 등 추진
 - 보조기기 전달체계 관련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지역보조기기 센터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유사사업 협력.조정방안 마련

4 장애인서비스과

<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현장 방문 조사(지역발달센터) 및 시·도의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 확정
 - * ①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으며, ②개인·사회환경에 따른 지원 필요도도 강해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서비스 내용)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선정기준에 따라 3가지 서비스 중 적합한 서비스에 배치하여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 ① (24시간 개별 지원) 주중 지역사회 낮 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340명)
 - * 산책, 체육, 음악, 미술활동 등 지역사회 생활 훈련 지원
 - ② (주간 개별 지원)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 보강과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500명)
 - ③ (주간 그룹형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낮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지원(1,500명)

<서비스 제공시간>

24시간 개별 지원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 09:00~17:00 ▪(야간) 17:00~09:00 *금요일은 20시까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 10: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 09:00~18:00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공휴일 휴무 (대체공휴일 운영 가능)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 **(현황)**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 ('24) 활동지원 급여(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 936천원 ~ 7,475천원 + 특별지원 급여(요건 충족 시 중복지원 최대 6개월) 313천원 ~ 1,247천원
- **(지원대상)**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수급자격(42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 ('11년) 1급 → ('13년) 1~2급 → ('15.6월) 1~3급 → ('19.7월) 장애등급 무관
 -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급여사용)** 수급자는 활동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 서비스 시작·종료시 바우처 카드로 급여비용 결제
 - **(활동지원기관)**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 수급자 수,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
 - **(활동지원인력)** 활동보조는 교육(50시간)을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
- **(가족급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종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예외적 장애인활동지원(가족급여)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24.11.~'26.10.)
 - **(대상자 기준; 최종증 발달장애인)** GAS 척도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발달장애인
 - **(대상자 기준; 희귀질환자*)** 희귀질환자 중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환
 -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 자
 - **(신청자격)** 최초 연계 요청일 이후 60일 이상 미연계 지속*
 - * 거주지 관할 내 복수의 제공기관에 대한 수급자의 서비스 신청 여부 확인

5 장애인건강과

<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

- (현황) 장애인 권리의식 증진, 건강욕구 확대.다양화 등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중장기 추진과제 발굴 및 종합계획* 마련
* 장애인건강보건통계 활용 및 장애인단체의 건강욕구 및 목소리 등 반영
- (향후계획) 관계단체·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부처협의, 장애인정책조정 위 심의 등을 거쳐 종합계획 확정(~12월)

< 장애인 건강주치의 >

- (현황)
 - 「장애인건강권법」 개정('23.12.14 시행)에 따라, 4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확대(중증 → 모든 장애인), 방문진료 횟수 확대 등 제도 개선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주요 개선사항>			
구분		기존	개선
건강주치의	대상자 확대 (일반건강관리)	중증장애인	전체 장애인(경증 포함)
	방문서비스 확대	중증장애인 연 18회	중증장애인 연 24회 경증장애인 연 4회
	주장애 주치의 확대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일부 상급종합병원
치과주치의	대상자 확대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
	사업지역 확대	부산시, 대구남구, 제주시	전국

- 등록 주치의 및 장애인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홍보 강화
 - * 4대보험 통합고지서 활용,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권역별 설명회 홍보지원, 건보공단 안내서 활용 등
- (향후계획) 국정과제 47-2에 따라 방문재활서비스 도입방안 검토 및 방문재활 관련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24.12월)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

- (현황) 장애인이 불편 없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편의·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검진기관 지정·지원
 - * '24.10월 30개 공모 기관 지정 중 18개소 운영 ⇒ 나머지 12개소 운영 준비 중
 - 「장애인건강권법」 개정('23.12.14.시행)으로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84개소 지정)
⇒ 3년 이내 시설·장비 등 지정 기준 충족 필요(~'26.12월)
- (향후계획) 모든 지정기관이 조속한 시일내에 장애인 건강검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및 지원

< 여성장애인 의료지원 >

- (현황)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지원 및 출산지원금 확대('23년 1백만원→'24년 1.2백만원)
 - * '24.10.현재 8개 시·도, 지정기관 10개소 모두 개소 완료
- (향후계획) 여성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상황 등 모니터링 지속, 지자체 지정기관에 대한 관리·지원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 ~ '27)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27년까지 확대 추진(10개→15개소)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

- (현황)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의료지원 및 행동문제치료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운영('16~, 9개 시도 12개소)
 - * 서울 3개소, 강원 2개소, 부산·인천·경기·충북·전북·경남·제주 각 1개소
- (향후계획)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전국적으로 추가 확충* 추진(~'25.)
 - * 「발달장애인법」('25.8.17. 시행예정)에 따라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설치 예정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

- (현황) 성장기 장애아동의 의사소통, 운동, 감각 등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재활, 놀이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23) 79천명 → ('24) 86천명, 1인당 월 최대 25만원 지원

- (향후계획) 장애 조기개입 강화를 위해 장애미등록 아동(장애 예견) 지원연령기준 완화*(6세 미만→ 9세 미만) 및 관련 예산 확보 추진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25.1.3.시행 예정)

2024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연수

[부록]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주소록

지역사회통합돌봄,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

2024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주소록

*단체명 가나다순

연번	단체명	대표자	주소
1	국제키비탄한국본부	이연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82, A동305호 (연희동,브라운스톤연희)
2	자행회	김 우	서울 중구 장충단로 188(분도빌딩 208호)
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성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3층(여의도동, 이룸센터)
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수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2504호(양평동)
5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28길 17 3층 (당산동3가,한얼빌딩)
6	한국농아인협회	최광휴 (직무대행)	서울 금천구 벚꽃로 234, 11층 1103호(가산동)
7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양영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33(중앙보훈회관 607호)
8	한국뇌성마비복지회	김정우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40길 16
9	한국시각장애노인복지협회	조학환	서울 노원구 상계로 23길 42 3,4층(상계동)
10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6층(여의도동, 이룸센터)
11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김세룡	서울 중랑구 동일로 136길 10 301호 (중화동,청원다미소아파트상가)
12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정효	서울 금천구 서부셋길 648(가산동 493-6) 대륭테크노타워6차804-1호
13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이은경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 102동409호 (경운동,운현궁SK허브)
14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4층(여의도동, 이룸센터)
15	한국의지보조기협회	조일호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29 (갈월동) 예안빌딩 5층
16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306호 (여의도동, 이룸센터)
17	한국장루장애인협회	전봉규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7길 71, 2층(용두동)

연번	단체명	대표자	주소
1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영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4층(여의도동, 이룸센터)
1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3층(여의도동, 이룸센터)
20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김 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E7-3, 314호
21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조석영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45-4(한국사회복지공제회관 9층)
22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석왕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903호(도화동, 삼창플라자)
23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6층(여의도동, 이룸센터)
24	한국장애인연맹(DPI)	이영석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4층(여의도동, 이룸센터)
25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권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46 이엔씨드림타워 1303호
26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진형식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6층(여의도동, 이룸센터)
27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박경순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38길 12, 진이케이드빌 502호
28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김인규	서울 서초구 명달로 134, 5층(서초동, 송암빌딩)
29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박영욱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 1009호 (여의도동, 백상빌딩)
30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상헌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7가길23, 이오빌딩 8층
31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이정식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4층(여의도동, 이룸센터)
32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황재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3층(여의도동, 이룸센터)
33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진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6층(여의도동, 이룸센터)
34	해냄복지회	김재익	서울 강남구 역삼로3길 7 SK허브블루711호

